

외국인 학생 관리 지원 내규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원 내규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국제교류원 운영 규정」 제5조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제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본교 외국인 학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‘학위과정학생’ 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.
2. ‘어학연수생’ 은 한국어학습을 목적으로 본교 한국어교육원에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.

제 2 장 학사 및 체류 지원

제3조 (학사지원) ①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본교에서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② 국제교류원은 관련부서에 외국인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고, 교과목이수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제교류원은 매년 외국인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, 외국인 학생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④ 국제교류원은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, 학사 담당부서 및 소속 학부(과)와 협력하여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의 학사지도를 실시한다.
- ⑤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제4조 (체류지원) ①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유학생 체류와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.

- ②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 담당자는 유학생 현황을 법무부가 정한 바에 따라 ‘유학생 정보시스템’ 에 신고한다.
- ③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 담당자는 유학생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가 정한 바에 따라 ‘유학생 정보시스템’ 에 신고한다.

제 3 장 생활지원 및 위기관리

제5조 (학습 및 생활지원) ①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학습과 생활관련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.

- ② 외국인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재학생 중 ‘글로벌버디’를 선발하여 외국인 학생과 매칭하여 지원하도록 한다.
- ③ 외국인 학생의 학습역량, 진로 및 심리상담, 취·창업관련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, 국제교류원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인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④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기숙사에 우선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⑤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 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을 실시하고, 정기적인 외국인 학생 간담회를 실시하여 외국인 학생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.
- ⑥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, 이를 외국인 학생 관리 지원 프로그램 수립·운영에 반영한다.

- 제6조 (위기관리)** ① 외국인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 또는 질병·상해 보장을 위한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.
- ②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위를 파악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, 대학본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.
 - ③ 국제교류원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인 학생 비상연락망을 구성하고, 상시 상황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④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, 안전교육, 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학생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4 장 기 타

- 제7조 (준용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, 국제교류원 운영 규정, 교육부 지침, 법무부 지침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되, 2020. 3. 1부터 적용한다.
2.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「국제문화원 규정 시행세칙」을 폐지하고 본 규정으로 대체한다.